

대만 · 향향 · 일본의 수출검사제도시찰(하)

Ⅵ. 일본시찰

일본의 섬유제품 검사제도의 운영 특히 공장검사원제도를 조사연구키 위하여 일본방적검사협회, 일본화학섬유검사협회, 판본방적주식회사의 상육공장, 전액공장, 부도방적주식회사의 성북공장 일동방적주식회사의 이원공장, 반전방적주식회사의 안화전공장, 중소제직공장으로 수, 대화등을 시찰한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검사제도운영

1) 검사기관

섬유관계 민간검사기관 15개 검사기관은 전부 재단법인체로 생산업계별로 설립되어 있어서 각 생산업계의 생산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바 일본 방적검사협회는 방적협회계 생산제품을 일본화학섬유검사협회는 화학섬유협회계의 생산제품을 검사하므로써 해업계의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해외시장의 성가유지 및 수출증대에 공헌하고 있으며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기관의 다원화제도를 채택하므로써 검사소에 따르는 검사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민간검사기관들은 섬유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기관의 검사범위(신사협정을 맺는다고 함) 검사수준의 통일 품위등 관능검사 통일등을 기하고 있다고 함.

2) 검사면제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검사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검사면제는 있을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검사법 13조(적용제외)를 적용하여 수출검사를 면제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외국의 사절단이나 주재공관원들의 개

인적 사용을 위하여 지정화물을 수출할 때나 외국여행자들이 탈관에 신조후
별송품으로서 수출할 때에나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등에 출품키 위하여 무환
Base로 수출하거나 상거래를 위한 견본등을 수출할 때에 한하여 검사를 면
제하여 주고 있다고 함.

3) 국명불표시

Buyer의 요청에 따라 국명불표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소장의 재량으
로 이를 허가하고 있다고 함.

4) 혼방사, 혼방직물등의 적용검사한계

i) 모섬유와 기타 섬유를 혼용한 것은 모섬유의 중량이 총중량의 10%이
상일 때에는 모사 또는 모직물의 검사기준에 따르되 그 이외의 것은 혼용된
중량이 많은 섬유의 명을 부친 사 또는 직물의 검사기준에 따르고

ii) 혼용량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견, 마, 비스코스, 아세테이트단섬유
면 및 기타 섬유의 순서에 따른 사 또는 직물의 검사기준에 따르며

iii) 견사와 견사이외의 사로서 교직한 직물(모직직물제외)은 견사의 본수
가 경위사 총본수의 1/3이상일 때에는 견직물의 검사기준에 따르되 기타 교
직물은 총본수가 많은 섬유의 직물의 검사기준에 따르며 총본수가 같을 때
에는 ii)의 요령에 따르고 있음.

5) 국검입회검사

일본에서는 수출검사법 제40조를 근거로서 입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기관 수출업자의 사무소 또는 창고와 보세창고에 임하여 지정화물이 검
사기준에 부합여부 검사업무현황 또는 장식류등을 조사하므로써 민간검사기
관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1년
에 1~2회 확인검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하며 검사업무는 완전히 검사기
관에 이양하므로써 검사업무운영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 주므로써

운영의 모를 기하고 있다고 함.

6) 지역별차등검사제도

수출품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성가유지를 위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해지역의 품질수준, 시장성, 수요자의 기호성 및 풍습등을 감안하여 검사기준의 최저선 이상에서 검사소 재량으로 처리하는 수도 있는가 하면 수출조합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하여 품질수준을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바

예를 들면 면사에 있어서 A급품만을 수출하게 한다든지 염색직물에서는 Washable Color이상의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등임

2. 공장검사원제도운영

1) 재료검사

수출검사법에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료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직물생지품 면직물 정리후품, 인견직물, 스프직물, 코듀로이 동암모니아직물, 장섬유사 또는 방적사로 제직한 아세테이트 직물등에 대하여 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면사의 경우는 재료검사 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상관습상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가격형성이 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수출품이든 내수품이든 간에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품질향상은 물론 기술발전을 기하고 있다고 함.

2) 공장검사원(축탁검사원)제도

① 상술한 바와 같이 수출품이든 내수품이든 간에 전섬유제품을 검사하게 되므로써 검사협회의 시설 및 인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검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공장검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수출품의 경우는 통상산업성

에서 임명한 검사원이 검사하고 공장검사원은 내수품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의 모를 기하여 전생산품을 공장검사원이 검사를 행하고 있는 대신에 검사협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음. 검사협회의 감독은 공장의 랭킹에 따라 A급공장은 월1회, B급공장은 월3회 C급공장은 주1회 정도 공장에 임하여 검사한 연후에 시료를 Sampling하여 각검사소에 송부하여 시험을 행하는 한편 검사협회에서는 수시로 시중에서 시료를 Sampling하여 확인검사를 행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겐우로 있다고 함.

② 공장검사원 임명은 생산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생산량 검사시설 및 자체검사원의 정확성(3개월간 Data로 판정)과 6개월간의 검사소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협회의 이사장명의로서 임명하게 되는바 현재 약 8할의 공장에 공장검사원이 임명되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함.

③ 공장검사원이 임명된 곤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며 검사결과가 상이할 때에는 공장검사원에 임의를 환기시키는가 하면 정도에 따라 관리자에게도 임의를 환기시켜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장검사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1) 수출실적(1966년도)

전섬유제품이 16억 9,723만불이며

면 사 1,631만불

면 포 3억 865만불

계 3억 2,496만불로서

면사포가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화섬이 6억 8,026만불로서 40.1%

2차제품이 4억 8,334만불로서 28.5%

모마제품이 1억 8,121만불로서 10.7%

를 차지하고 있음

2) 시 설(1965년말)

방직시설 12,728,000종

직기시설 331, 580대(운전가능 대수)

(주 : 시설에 있어서 변동이 심하다고 함)

VII. 건의사항

1. 시험연구용 시설보완 및 연구사업강화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신제품개발은 물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험연구시설을 설치하고 활발히 연구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실정은 미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인바 시험연구용시설을 보완함과 아울러 신제품개발 연구, 방직공장에 있어서 애로점에 대한 연구타개 검사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검사 기준작성,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될 것임.

2. 검사기관지정재조정

앞으로 시행예정인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상품의 검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생산업계별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는 물론 해업계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수출검사품목에 대한 검사기관도 다원화하여 생산업계별로 지정함이 검사제도

운영상 부당하다고 사료됨.

3. 검사면제제도운영

수출검사의 목적은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향상을 향하고 강제적인 검사를 하도록 수출검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사면제제도는 법 13조를 근거로서 입법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려고 하는바 이를 지양하고 일본의 제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4. 검사품목별 검사소요인 결정

수출검사를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검사에 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선적기일에 박두하여 검사신청을 하므로써 충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나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품목별로 검사소요일을 정하여 그 이전에 검사신청을 하게 하므로써 검사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임.

5. 재료검사제도운영

수출검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료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각종 사유 및 원반작물에 대한 재료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의 유지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6. 수출지역별로 차등검사실시

현행 수출검사기준은 수출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제도와 같이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성, 품질수준, 수요자의 기호성 및 풍습등에 따라 요구품질과 포장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수출지역별로 차등검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임.

7. 공장검사원제도운영

수출량의 증대와 앞으로 실행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수반하는 업무량의 신속처리와 수출검사업무의 간소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장검사원제도를 채택하여야 될 것임.

8. 검사기준개정

우리 나라 검사기준은 대개의 경우 외국의 검사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검사기준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개정하여야 될 것임.